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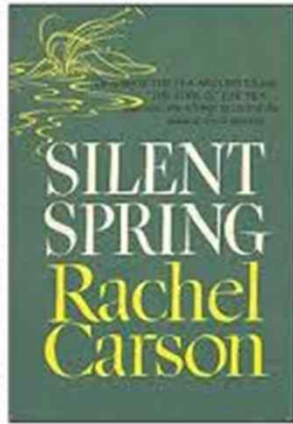
2014. 11. 11.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정남순



목차



1. 화학물질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관리의필요성
2.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현황
3.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개편
 - 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나. 화학물질관리법
4. 향후 과제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출량 (단위: kg당 mg)

아릴아민(발암)	기준치 30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내분비계장애)	기준치 500
• 베이직하우스(HNDP2121)	88.8	• 에비수	412
• 베이직하우스(HNDP2132)	11.6	• 게스	318
		• 빈폴	293
		• 버커루	280
		• TBJ	157
		• 베이직하우스(HNDP2132)	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주요 화학물질 사고 사례

발생일시	업 체	사고 내용	원 인
2007. 2. 15	단양 제지회사	탱크로리 전복 탄산칼슘 20t 농경지 유출	운전자 부주의
2007. 6. 5	부산 페인트 공장	페인트 혼합물질에 정전기 원인 화재	취급 부주의
2008. 1. 10	구미 유리공장	염산탱크 폭발 인부 1명 사망	취급 부주의
2008. 10. 22	울산 비료공장	질산저장시설 밸브 노후로 인한 누출	시설 노후화
2009. 6. 10	부산 화학회사	원료 혼합 중 반응기 폭발	취급 부주의
2009. 9. 23	시흥 약품회사	폐수 혼합 중 가스·연기 발생	취급 부주의
2010. 6. 24	경산 반도체회사	질산 저장탱크서 유독성 가스 발생	취급 부주의
2010. 9. 9	광주 철강회사	과산화수소 이송 중 300ℓ 하수관로 유출	취급 부주의
2011. 3. 5	진천 철강공장	수산화나트륨 이송 중 배관 노후로 하천 유출	관리 부주의
2011. 4. 27	당진 화학공장	염산 유출 뒤 염산 희석수 8~10t 유출	취급 부주의

(자료: 환경부)



친족사실조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시 각 부처의 반응



- **식약청**

: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자체를 세척하는 용도로서 공산품으로 관리되어야

- **지식경제부**

: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에는 가습기 살균제 포함되어 있지 않아

- **환경부**

: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은 유해물질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령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화학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위험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 비료 사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의약품 마약 화장품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	약사법 마약류등의관리에관한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위험물 화학류	안전행정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폭발성물질	국토교통부	선박안전법
방사성물질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법
**제품(공산품)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가습기 살균제 관리는 어디서?



- 약사법 관리대상 아님
: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으로 미지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대상?
: 가습기 살균제 자율안전대상품목(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대상 : 기존물질

품공법 생활용품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의 내용



- 8.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제조업자등이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4품목)



-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기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공산품 안전관리

자율인증대상 공산품(47품목)



- 섬유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 [유아용 섬유제품](#)
- 화학
-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 [부동액](#)
- [생활화학가정용품](#)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안전유리](#)
-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 [자동차용 타이어](#)
- [유아보호용품](#)
- 기계
- [빙삭기](#)
- [자동차용 휴대용잭](#)
- 토건
- [미끄럼 방지타일](#)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케이트](#)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벽지및종이장판지, 쇼핑카트,](#)
-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의자,](#)
- [유아용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휴대용사다리, 모터달린보드,](#)
-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 [운동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생활화학가정용품)



- **4. 안전요건** 겉모양은 **4.1.1**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량 또는 용량은 **5.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4.1.2**에 적합하여야 한다.
- **4.1 겉모양**
- **(1)** 이물질의 혼입 및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 **(2)**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 **(3)** 구조는 안전상 결점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4)**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
- **4.2 중량 또는 용량 5.1**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시치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4.3 유해성분의 기준 5.2~5.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염산⁽¹⁾, 황산(%) 수산화나트륨⁽²⁾, 수산화칼륨(%) 테트라클로로 에틸렌(%)트리클로로 에틸렌(%)
- **4.4 용기 모양 및 강도 5.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하이포(차아)염소산염을 포함하는 제품(예: 락스류)의 경우 용기 토출부에 제품을 따를 때 용액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생활화학가정용품 부속서 7)



- 7. 표시사항
-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 7.1.1 품명
- 7.1.2 종류
- 7.1.3 모델명
- 7.1.4 제조연월
- 7.1.5 제조자명
-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7.1.7 주소 및 전화번호
- 7.1.8 제조국명
- 7.1.9 성분^(주1)
- 7.1.10 독성^(주2)(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 7.1.11 중량 또는 용량^(주3)
- 7.1.12 “KC마크는 이 제품이 방향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 주 1 성분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을 표시한다 (표시 예)- 표백제, 산도조절제, 살균제, 형광증백제, 향료
- 주 2 독성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유해법상 제조 수입또는 사용제한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 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

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2011년)

- PGH CAS RN 374572-91-5 기존물질(고유번호 2003-3-2357)
- PHMG CAS RN 89697-78-9 '검색결과가 없습니다(추가 정보: 신규화학물질로 검색되었습니다)'
- 2014년 현재 : PHMG는 유독물(2012. 유독물 지정)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4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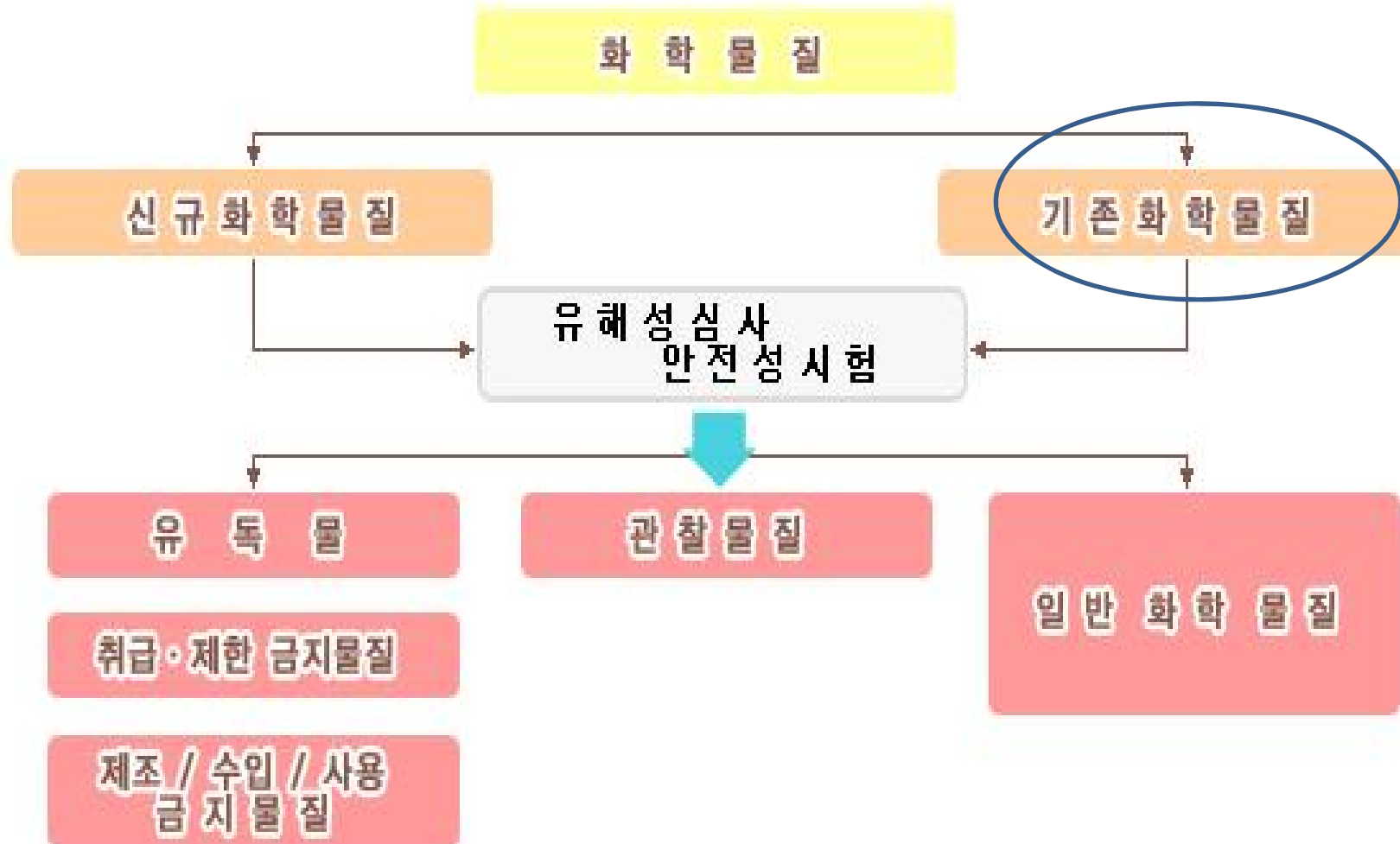


-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유해법상 화학물질관리



②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심사체계



2012년에야 유독물 지정된 이유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신규물질 x 기존물질 0
- 기존물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정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 1988년부터 매년 약 20여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성시험 수행, 211년 말까지 총 6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시험, 2012년 환경백서 243면)
-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대략 4만3천종 (2006년 현재 418백만 톤)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물질 15%, 환경부 산업계 설명회 자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2011. 3. 29.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변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

화학물질 확인, 평가 + 안전 관리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2015시행)
화학물질 확인, 평가

화학물질관리법(2015년시행)

안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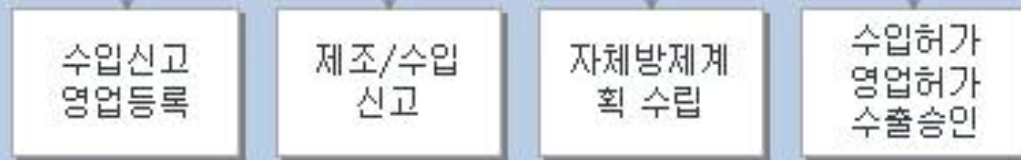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
확인 및 안
전성 평가

시장진입



시장유통



화학물질
관리

환경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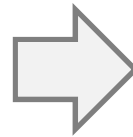


화학물질 확인 및 안전성 평가 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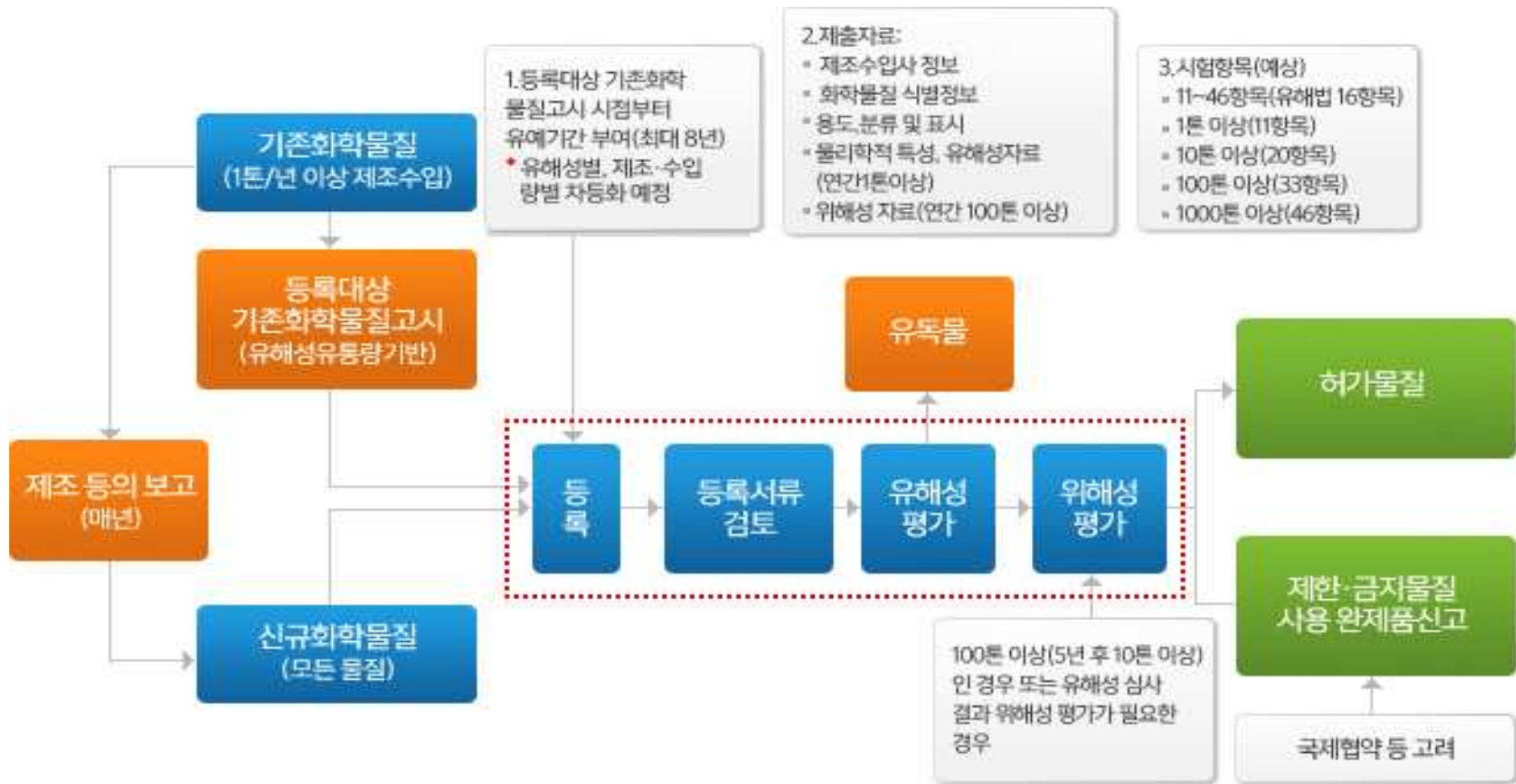
신규화학물질
: 안전성제출 의무 ○

기존 화학물질
: 안전성 자료 제출의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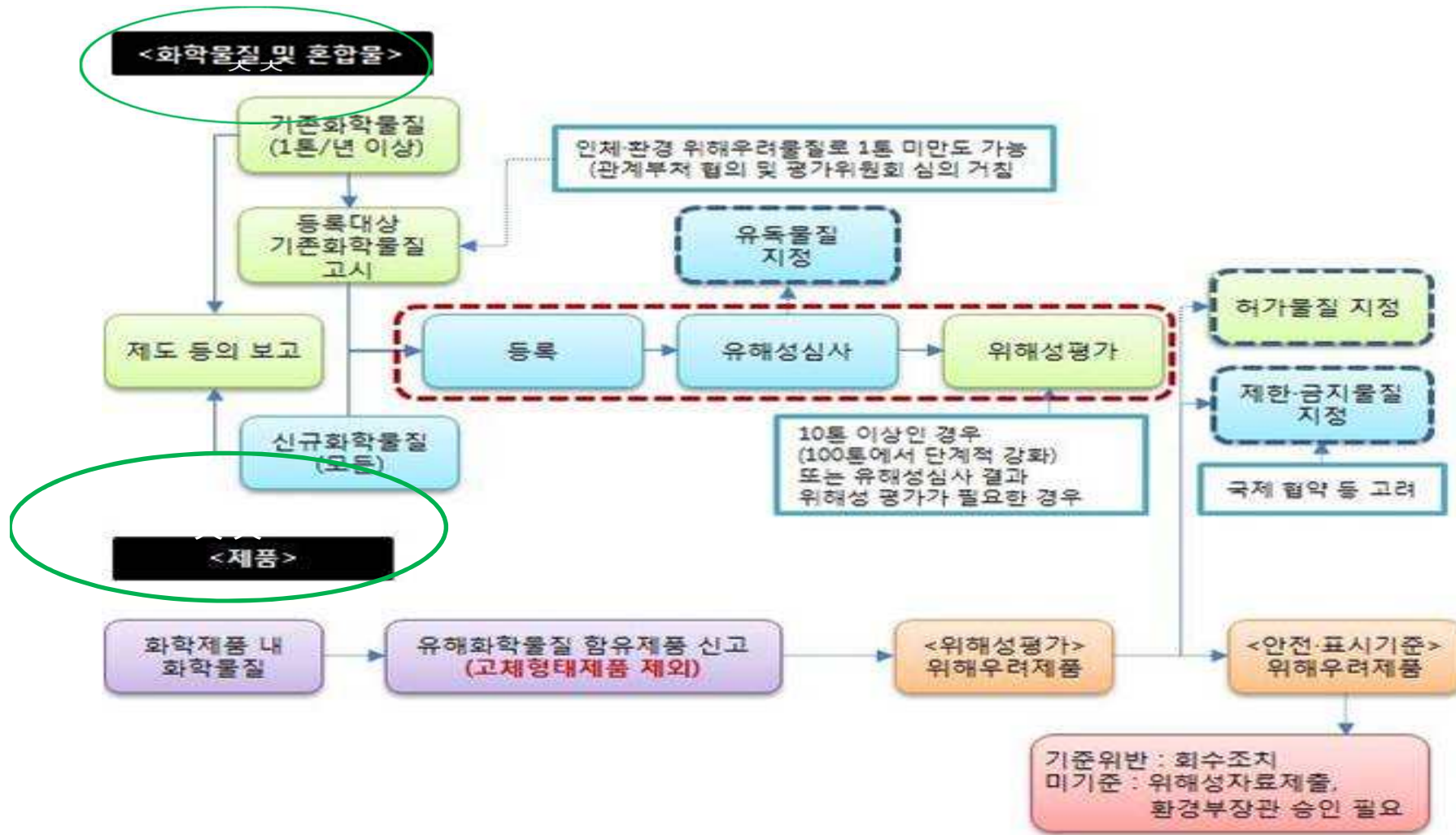
**신규 화학물질+기존
화학물질 모두 ○**

화평법 체계도



[화평법 체계도]

화평법 내 제품 안전관리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19개 품목) 화평법령안 입법예고



품공법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생활
화학용품 (8개)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
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비관리대상품목(11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스티커제거제,
표면보호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미생물탈취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및 위해성 평가



- 제3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위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안 제54조

- 제54조(위해성평가 시기·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제품



-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신고내용(시행규칙안 제51조)



1. 신고자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2.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그 선임된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3. 제품에 관한 정보(제품·상품명, 용량, 사용설명서 등)
4.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명칭, 함량**(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을 포함한다)
5.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
6.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
7. 제품의 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장외영향평가(화관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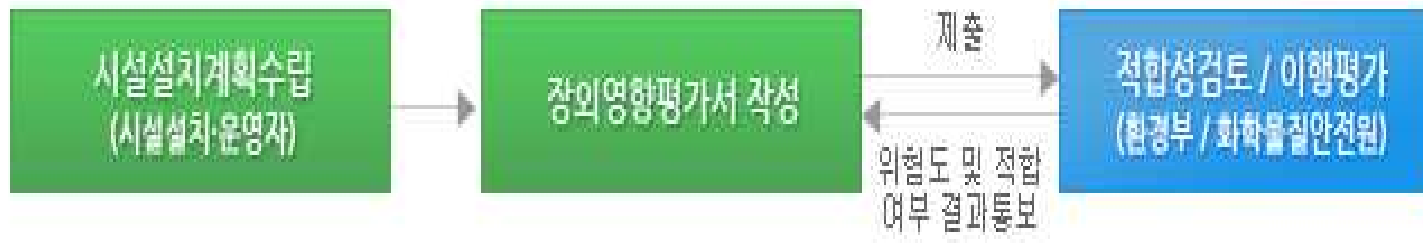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법 제23조)

[장외영향 평가서의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장외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시기



<p>평가내용</p>	<p>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라. 기상 정보</p> <p>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라. 안전성 확보 방안</p> <p>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p>
<p>평가시기</p>	<p>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p>

장외영향평가서 내용(화관법시행규칙안 제19조)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설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 평가정보

-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 라. 기상 정보

2. 장외 평가정보

- 가. 공정 위험성 분석
-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라. 안전성 확보 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

화학물질통계조사(화평법 제10조)



<p>통계조사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p>통계조사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정보
<p>조사 주기</p>	<p>2년</p>

화학물질배출량조사(화평법 제11조)



<p>배출량대상 화학물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p>배출량조사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p>조사 주기</p>	<p>매년</p>

제품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안 제5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

1. 제품명
2.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노출시 대처방법 등 취급시 주의사항

② 제품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의 정보와 같다.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



- 어떤 성분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들어 있나?
- 안전할까?
- 보다 안전한 다른 대체물질은 없을까?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뭐가 들었을까?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4.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5. 세제, 표백제등과 혼용하지 마세요. 6. 겨울철 실온보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품명: 섬유유연제 용량: 3000ml 액상 · 약산성

성분: 식물성 계면활성제/녹차추출물/알로에추출물
허브추출물/세라미이드추출물

용도: 정전기 방지, 섬유유연

표준사용량: 별도표 참조

유통기한: 개봉후 2년 제조년월: 별도표기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판매원: SM Korea 1588-9709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7 코오롱디지털타워빌린트1215호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 보상해 드립니다.

kpl
Korea Product Labe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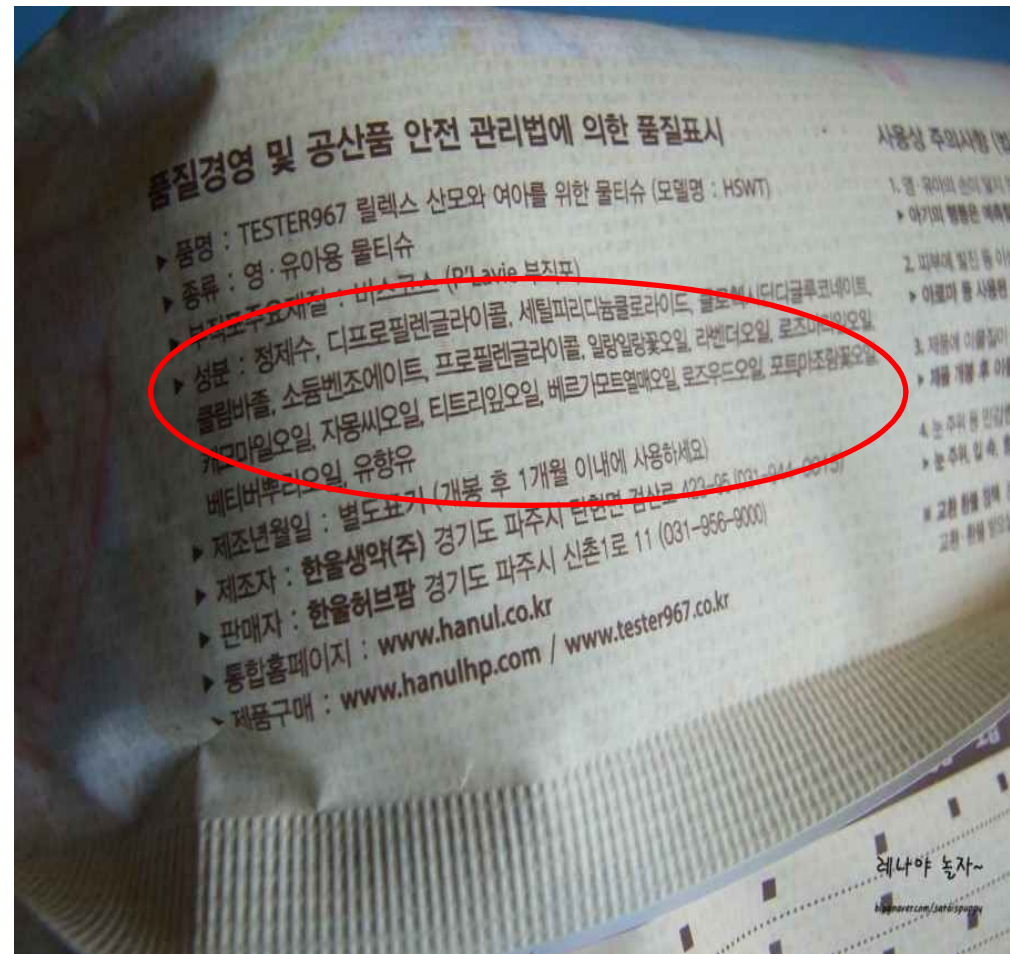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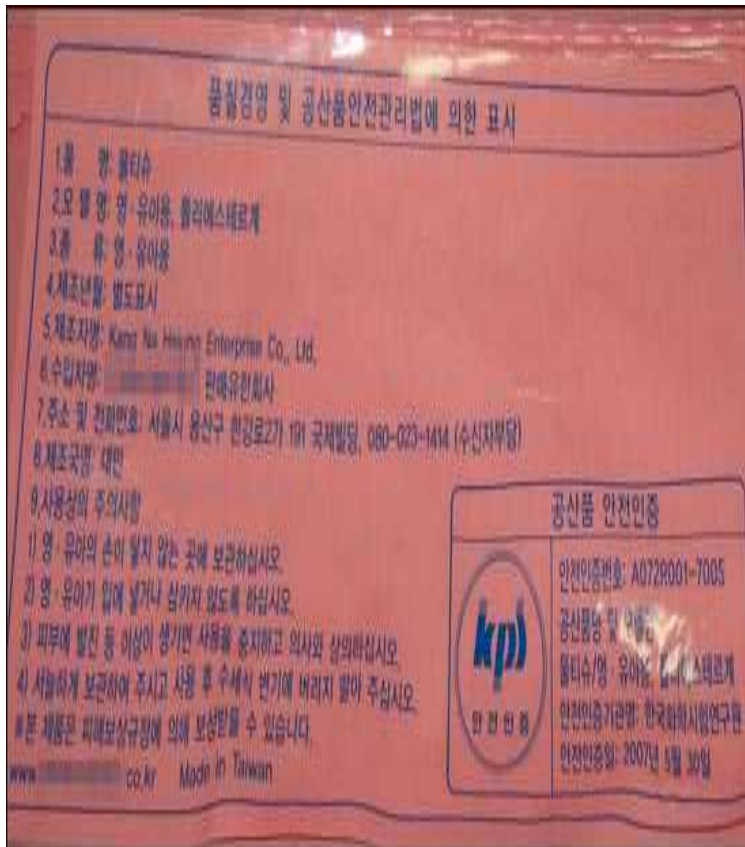
NOPE
분리배출
무엇이든

전성분: 황제수 · 부틸렌글라이콜 · 향료 · 디에치
올 · 프로필렌글라이콜 · 피이지-5레이프세드스테롤
· 피이지-30디올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 · 페놀
신에탄올 · 히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 · 메틸파라
벤 · 프로필파라벤 · 테트라소름이디피에이 · 비에이
치리 · 이소코틸팔미테이트 · 글리세릴스테아레이
트 · 시트릭애씨드 · 적색504호 · 알파-이소메칠이오
논 · 멘틸알코올 · 멘틸벤조에이트 · 멘
질살리실레이트 · 신니알알코올 · 시트
로넬롤 · 루미린 · 유제놀 · 피넬 · 제
리니올 · 핵실산남알 · 히드록시시트
로넬알 · 이소유제놀 · 리모넨 · 리날롤

♻️ 재활용
알미늄 뚜껑 OTHER

*본 제품은 최상급으로서 외용전용으로 알코올
제외한 용에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특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성분 표시 전(왼쪽)후(오른쪽)



전성분표시(화장품, 식품첨가물)



Cosmetics Counseling

화장품 표시 제대로 읽기

성분 목록에서 앞쪽에 위치했는지, 뒤쪽에 위치했는지 확인한다. 방부제 근처에 성분이 있다면 아주 소량 들어 있다는 뜻이다.

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고, 그 다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와 상관없이 적는다. 같은 성분인데 명칭을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성분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OEM이 많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엔 제조원에 비중을 두고 확인하자. 브랜드명은 중요하지 않다.

★ 화장품 용기 밑에 제조일자 확인은 필수!



우리 주변에 화학물질



DANGER

구미 불산유출
여수 GS 기름유출
빙그레 암모니아 유출
...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알고 싶어요!



- 지역사회 알권리법 (1986년)
- 화학물질 공개 기준 45kg 이상
- 1987년 불산 24톤 유출시 20분 만에 주민 대피 사망자 없음



- 토론토 시 알권리 조례
- 동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확인 가능



- 지역사회 알권리법 없음
- 화학물질 공개 기준 100kg 이상 사용한 기업 (이 중 86% 공개 거부)
- 구미 불산 10톤 유출시 주민대피령 4시간 후 발령 노동자 5명 사망 18명 입원

영업비밀 보호 VS 안전



- **화평법**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안전한가?



오시썩썩

New
가습기당면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930111

550 mL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xing
라벤더향

8 801154 022120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는 충분한가 ?



- 연간 1톤미만의 기존화학물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경우 연간 1톤미만 기존화학물질이
있음

- 2011년 7월22일 질병관리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의회-> 2011년 12월1일성분분
석량 확인-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화평법 충분한가: 기존물질의 등록대상 확대



- **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 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화평법 충분한가 : 1톤미만 화학물질 관리



- **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 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 1톤미만 위해 우려 화학물질 관리 목록 생성 및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정책의 실효성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1톤미만 물질 중 위해우려 물질 목록화 작업(화평법 제10조 제1항 단서)

:등록대상물질 지정

- 신속 정확한 유해성 심사 평가

※ 화학물질 심사건수:34건('91)→235건('97)→918건('06)→441건('08)→298건('09),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의 인력(6명)은 증원 전무, 화학물질관리정책관 신설 및 국립환경과학원내 화학물질등록평가부 신설 계획-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2011~2015)

- 간이등록에 대한 유해성 심사 필요 자료 제출 여부 판단/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보도설명자료
(14. 9. 2)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기자
 제목 :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
 (14.8.27~, 시사저널 등)

1. 기사내용

-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명적 독성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아기물티슈가 유통되고 있음
-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식약처의 독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정도로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며, 그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현재,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식약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 할 예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15년 7월 1일 시행예정

물티슈 유해성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베이비뉴스] 입력 2014-09-11 6:57

가- 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성분이 임산부와 신생아에 치명적이라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논평을 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홈페이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대기업 3040 직장인 고민, 영어 성적 제출하는 날이 가장 두려워..

요즘 3040세대가 받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창시절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듯 하다.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유배들과의 비교 뿐 아니라, 승진 및 이직과 관련하여서도 영어성적은 필수이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최근 304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영어강의가... 더보기

김재원 의원, “국내 허가 치약 중 3분의 2, ‘인체 유해’ 논란 성분 함유”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 2014-10-05 15:33:08 | 수정 : 2014-10-05 15:33:08

댓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밴드 | 글자크기 + - | ()

국내에서 허가받은 치약 중 3분의 2에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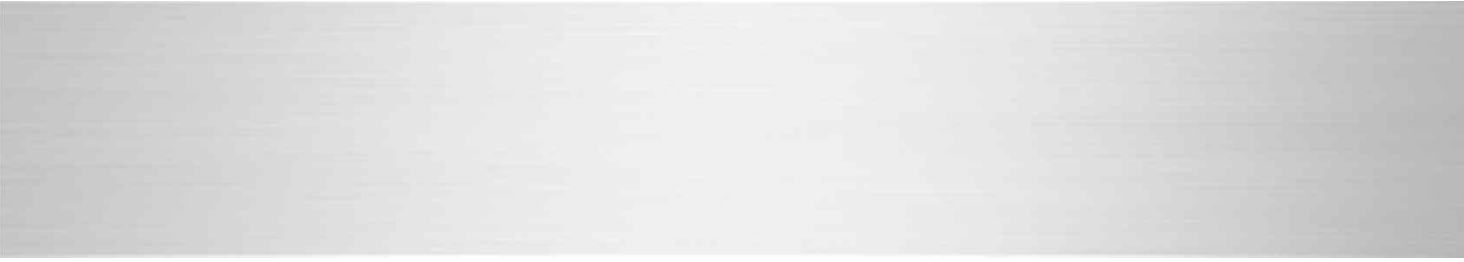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팔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맛있는(OR) 건강한 빵 예쁜(OR)건강한 얼굴





감사합니다.